

안전인증소식

[Q&A]

전기용품 안전인증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KC마크, 자율안전확인제도」 등이 신규운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해야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응답을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 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 주의 : 본 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협회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Question 조립제품 및 KIT / DIY 상태로 판매할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전자상가에서 PC를 조립하여 판매 할 경우 인증을 받지 않고도 판매를 하는 것 같던데, LCD TV를 PC조립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주문사양에 맞춰서 주문을 받아 TV케이스에 LCD 패널, AD보드, SMPS 등의 부품들을 조립하여 판매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는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율안전확인대상 품목은 반드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고 판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LCD TV도 동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입니다.

따라서, LCD TV가 Kit로 판매되더라도 반드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하며, LCD TV Kit를 구성하는 부품 그 자체가 안전인증대상(예:코드비교환형플러그)인 경우에는 동 부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인증을 받는 부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Q uestion 탄소사 발열체의 전기매트나 전기요 적용 여부

탄소사는 기존 열선내의 금속선의 저항을 발열체한 제품보다 효율이 우수하며 발열 속도나 발열체의 유연선과 내구성이 뛰어나며, 또한 탄소실의 병렬 구조 제품은 인입전류가 N개로 병렬 분산되어 위험성이 낮아져 안정성이 우수합니다. 현재 탄소사 면상 발열체가 전기매트나 전기요에 적용 불가하다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nswer 발열 구성이 탄소사로 구성된 발열체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2-17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나, 동 기준의 22.102항에 의하면 '발열체에는 연결이 없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발열체의 병렬연결은 현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Q uestion 전기온장고, 전기보온기의 차이점

전기온장고와 전기보온기의 차이가 음식류 등을 보온시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가의 여부로 알고 있음. 이것이 단순히 문이나 뚜껑이 있으면 밀폐된 것으로 간주하여 전기온장고로 보고, 문이나 뚜껑 등이 없으면 전기보온기로 판단한다는 것인지?
또한, 뚜껑 등의 유무로 판단한다면 이동식 국보온 운반차 같은 것은 뚜껑이 있으나 쌍화탕 온장고와 같이 본체에 고정된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 덮었다가 떼었다가 사용하는(마치 냄비뚜껑처럼 사용) 경우에는 전기온장고와 전기보온기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 nswer 전기보온기는 음식 또는 용기(그릇 류)를 보온하기 위한 전기용품으로, 보온플레이트(보온재반), 보온배식대 등이 있으며, 전기온장고는 밀폐된 공간에 식품 등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전기용품으로, 쌍화탕 온장고, 보온 진열장, 보온식 식기디스펜서등이 있음. 두 제품의 차이점은 밀폐된 공간에 식품이나 그릇을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키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기온장고에 속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보온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터에 의해 국을 보온하는 이동식 국보온 운반차는 전기보온기에 해당되며, 음식물을 냉장보관 하는 전기보냉고는 전기냉장고에 해당됩니다.